

EU Digital Services Act (DSA) 본격 시행

- 대기업 위주의 규제 시행 후 확대해 나갈 예정-

지난 8. 25.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이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 12.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2022. 7.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후 시행된 것이지만, 각종 디지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와 높은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행은 선제적으로 거대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디지털 세계는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된 만큼, EU에서 시행되는 법률이지만 이미 EU 외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배경

빅테크 기업 등 디지털 세계의 사업자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률과 각종 제도 등은 전 세계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EU는 그 규제의 흐름에 선두에 서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발표하며 고삐를 조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EU는 2020. 12. Digital Markets Act와 DSA를 선보였으며, 그 중 Digital Markets Act는 2023. 5. 2. 시행되었고, DSA는 2022. 7. 의회의 최종승인이 있는 후 2023. 4. 선제 규제대상 19개를 발표에 이어 2023. 8. 25.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 EU와 영국 빅테크 기업의 주요 규제 동향은 다음의 화우 뉴스레터를 참고(202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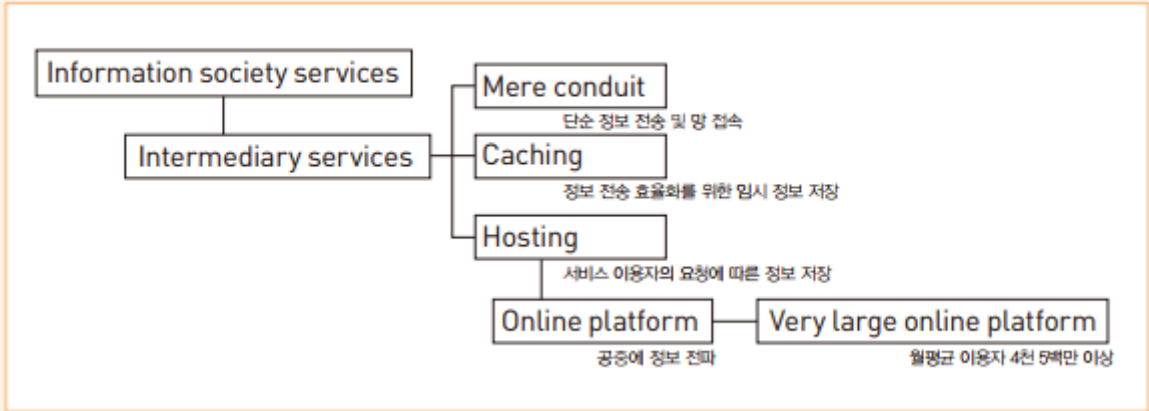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499>

다만, 2023. 8. 25. 시행된 것은 선제적으로 거대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와 검색엔진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2024. 2. 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EU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DSA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관련 규제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DSA의 주요 내용 및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능'과 '규모'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적 규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림1>)*

〈그림 1〉 DSA에 따른 정보화 서비스 사업 분류



DSA 사업자 분류 체계는 근본적인 정보전송 방식과 기능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역시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2) 박찬경,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규제냐, 자율이냐를 넘어서, 언론중재 p64

DSA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관련 조항	예시	주요 내용
단순 전달 서비스 (mere conduit services)	제3조 (g) (i) 제 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메인명등록서비스 -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 가상사설망 - DNS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당국 규제 준수 및 사업자 이행 사항 보고 - 회원국 및 EU 규제기관이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제공 - 매년 콘텐츠 제거, 조정 등 관련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알고리즘 결정,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등 관련 정책절차 사항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
캐싱서비스 (caching services)	제3조 (g) (ii) 제 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 리버스 프록시 - 콘텐츠 적응 프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호스팅 서비스 (hosting services)	제3조 (g) (iii) 제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컴퓨팅 - 웹호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에 추가로, - 제3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방법 마련 - 범죄 행위 발견 시 당국 보고
온라인 플랫폼 (online platform)	제3조 (j) Secti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에 추가로, - 플랫폼이 콘텐츠 삭제 시 이에 이의제기 가능한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마련 - 강화된 투명성 의무 준수 (온라인 광고, 추천 시스템)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 규제 - 미성년자 정보 이용 규제 - 민감정보 이용 규제 - 다크패턴 금지

<p>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very large online platform, very large search engine)</p>	<p>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으로는 알리바바,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17개사 선정 - 검색엔진은 구글과 Bing 	<p>위에 추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위험성 평가 및 완화방안 마련 - 회사 경영진과 직접 소통 가능한 준법감시인으로 독립적인 준법 기능 마련 - 플랫폼상 추천 시스템과 온라인 광고 관련 추가 정보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공
---	-------------	---	--

전술했듯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한 DSA 적용이 2023. 8. 25. 부터이고,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2024. 2.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DSA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당국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즉각적 반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DSA 미준수가 계속되면, EU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3. 기업들의 반응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주요 내용
<p>구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은 YouTube 크리에이터들에게 동영상 삭제 등 규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미 DSA 내용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 구글은 자사의 Ads Transparency Cente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또한 연구원들에게 구글 검색, YouTube, 구글 지도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범위를 늘리겠다는 입장
<p>메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자사의 플랫폼에 나오는 광고를 저장하는 Ad Library를 확장하고 있으며, 곧 EU 이용자에게 실제 보이는 모든 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결정하는 요인, 해당 광고 대상 등을 기록·보관할 예정이라 밝힘
<p>틱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틱톡은 EU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라 발표 - 알고리즘 기능을 끄면, 개인의 취향이 아닌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한 동영상이 노출됨 - 만 13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는 맞춤형 광고 송출 중단 예정
<p>스냅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냅챗은 EU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피드를 제거할 방법을 제공할 예정 - 이미 피드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관련 보고서를 발간 - 만 13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는 맞춤형 광고 송출 중단 예정 - 맞춤형 광고 기록·보관 예정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